

대통령령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3조제1항에 제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설립
된 한국원자력의학원

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11조제1항제15호”를 “법 제111조제1항제16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53조제1항제4의2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의3과 같다.

제15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호”를 “제3호 및 제3호의2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
별표 9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10 중 “제154조제6항”을 “제154조제7항”으로 한다.

[별표 9의3]

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(제154조제6항 관련)

1.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

[별표 10]

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, 국공립 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비파괴검사협회,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(제154조제7항 관련)

1.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(기술기준을 포함한다)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2.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법 제56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군사적 목적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에 관한 검사
 - 나. 법 제75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군사적 목적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
3.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법 제106조제2항의 보수교육의 실시 중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소지자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3조(수탁기관의 구분 등)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 ② (생략)	제153조(수탁기관의 구분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설립된 <u>한국원자력의학원</u>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54조(위탁할 수 있는 업무) ① <u>법 제111조제1항제15호</u> 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 1. ~ 13. (생략) ②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 ⑥ (생략)	제154조(위탁할 수 있는 업무) ① <u>법 제111조제1항제16호</u> -----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제153조제1항제4의2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의3과 같다.</u>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제15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위원회(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,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	제15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-----

기관을 포함한다)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(제3호의 사무에 한정한다)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제1호,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), 같은 영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·5. (생략)

-----제3호 및 제3호의
2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

4.·5. (현행과 같음)